

부속서 IV

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

필리핀

1. 이 양허표는 제8장(서비스 무역)의 부속서 II의 필리핀 양허표(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)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구체적 분야에 적용되며,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제8.6조(최혜국 대우), 제8.7조(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)제3항 및 제4항, 그리고 제8.10조(투명성 목록)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2. 이 양허표에 규정된 자연인의 범주에 대하여, 필리핀은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필리핀 영역에서 그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다음의 조건, 제한 또는 자격을 명시한다.
 - 가. 필리핀은 아래의 각 범주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일시적 입국 및 일시적 체류를 하려는 다른 당사자의 적용대상 자연인에게 개정되는 바에 따른 연방법 제613호(1940년 필리핀 이민법)에 따라 입국 전에 적절한 비자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.
 - 나. 개정되는 바에 따른 대통령령 제442호(필리핀 노동법) 제40조 및 그 시행규칙과 규정에 따라, 비거주 외국인은 신청 시점에 그 외국인이 제공하려는 서비스를 수행할 역량, 능력 및 의지가 있는 인이 필리핀에서 가용하지 않다는 결정이 내려진 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리핀으로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.
 - 다. 1987년 필리핀 헌법 제12조제14절에 따라, 필리핀에서의 모든 전문직 개업은 법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필리핀 시민으로 제한된다. 자연인의 활동 또는 사업이 필리핀 법과 규정에 따른 규제 대상 전문직 개업을 구성하는 경우, 그 자연인은 공화국법 제8981호[2000년 전문직규제위원회(PRC) 현대화법] 제7절제차관에 따라 전문직규제위원회로부터 규제 대상 전문직 개업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개정되는 바에 따른 필리핀 노동법 제40조에 따라 노동고용부(DOLE)로부터 외국인취업허가(AEP)를 취득해야 한다. 그 자연인은 적절한 전문직 규제법에 규정된 대로 외국 국민에 의한 전문직 개업에 관련된 요건도 마찬가지로 준수한다.

- 라. 법에 의하여 필리핀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유보된 활동(즉, 외국인 지분은 소수 지분으로 한정된다)의 경우, 모든 임원 및 관리자는 필리핀 시민이어야 한다. 실체의 이사회에서 비필리핀인 시민의 수는 그 실체의 외국인 총 자본 비율에 비례한다.
- 마. 통신 분야의 경우, 개인 서비스 공급자는 필리핀 시민이어야 한다. 실체의 이사회에서 비필리핀인 시민의 수는 그 실체의 외국인 총 자본 비율에 비례한다. 모든 임원과 관리자는 필리핀 시민이어야 한다.
- 바. 은행 서비스의 경우, 부속서 II 의 필리핀 양허표(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)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하지 않는다. 임원으로 고용되거나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배정된 비필리핀인 시민은 2명의 필리핀 시민을 견습생으로 둔다.
- 사. 모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의 경우, 기술직을 보유할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한정하여 그 기업의 운영 개시 5년 내에 고용될 수 있으며, 그들의 일시적 체류는 입국 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각 고용된 외국인은 최소 2명의 필리핀 시민을 견습생으로 둔다.
- 아. 운송 서비스의 경우, 기술직을 보유할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한정하여 그 기업의 운영 개시 5년 내에 고용될 수 있으며 그들의 일시적 체류는 입국 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각 고용된 외국인은 2명의 필리핀 시민을 견습생으로 둔다. 특수 선박의 경우, 외국인은 6개월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정원 외 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다.
- 자. 영주권자에 관련된 모든 조치는 약속하지 않는다. 필리핀은 외국 영주권자의 대우에 관한 법을 제정할 권리를 유보한다. 필리핀이 해당 법을 제정하는 때까지 그 밖의 당사자들의 영주권자에 관한 필리핀의 의무는 GATS에 따른 필리핀의 의무로 제한된다.
- 차. 이 양허표에서 1987년 필리핀 헌법이 언급되므로 약속은 1987년 필리핀 헌법에 따라 해석된다.

범주내용	조건 및 제한 (체류 기간을 포함함)
A. 상용 방문자	
<p><u>정의:</u></p> <p>필리핀 영역에 일시적으로 입국 또는 체류하는 자연인으로서 방문 기간 동안의 보수와 재정적 지원은 필리핀 밖에서 발생함.</p> <p>(i) 상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대표로서,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의 협상이 일반 대중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, 그 상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그러한 협상을 할 목적 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임.</p> <p>(ii)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필리핀 영역에 소재한 그 법인을 위하여 투자를 설립하거나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목적임.</p> <p>(iii) 사업 협상이나 회의에 참가할 목적임. 또는</p> <p>(iv) 필리핀 영역에 투자를 설립하거나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목적임.</p>	<p>필리핀에 최초 30일 동안 체류하는 각 당사자의 상용 방문자에게 일시적 입국 및 일시적 체류가 허용되며, 그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.</p>
B. 기업 내 전근자	

<p>정의:</p> <p>다른 당사자의 영역에 설립된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필리핀 영역에서의 상업적 주재(합작투자, 대표 사무소, 지점, 자회사 또는 계열사 중 어느 하나를 통한다)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근되고, 그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말함.</p>	<p>필리핀에 최초 30일 동안 체류하는 다른 당사자의 기업 내 전근자(즉, 임원, 관리자 및 전문가)에게 일시적 입국 및 일시적 체류가 허용되며, 그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.</p>
<p>(i) 임원: 그 조직에서 주로 그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서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,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,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만을 받는 자연인. 임원은 그 조직의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임.</p>	
<p>(ii) 관리자: 그 조직에서 주로 그 조직, 부서 또는 하위부서를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, 관리직 또는 전문직 직원을 감독 및 통제하는 기능을 행사하는 자연인.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음. 주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포함하지 않음. 또는</p>	
<p>(iii) 전문가: 그 조직에서 서비스 수립이나 공급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또는 그 조직의 서비스, 연구 장비, 기술 또는 경영</p>	

에 관한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자
연인. 면허를 소지한 전문직을 포함
함.